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연구분과위원회
규정폐지규정(안)**

○ 폐지이유

지방자치법(법률 제4,464호 '91.12.31)과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586호 '92. 2.15)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區議會에 常任委員會가 설치되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연구분과위원회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 관련법규: 지방자치법(법률 제4,464호 '91. 12.31)

-第50條(委員會의 設置)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586호 '92. 2.15)

-第20條의2(시·군 및 자치구 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연구분과위원회
규정폐지규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연구분과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附 則

이 예규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가 改正 公布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

○ 제정이유

'91.12.31. 法律 第4,464號로 改正公布된 地方自治法 第50條(委員會設置)에 우리區議會에도 常任委員會를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區議會에 접수되는 청원을 심도 있게 審査하기 위하여 기존규정을 폐지하고,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청원심사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청원의 소개 (제2조)
- 청원의 회부 (제5조)
- 청원의 심사 (제6조)
- 심사보고 (제11조)
- 청원인에 대한 통지 (제12조)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

第1條(目的) 이 규칙은 地方自治法 施行令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 의회(이하 “議會”라 한다)에 提出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審査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청원소개서등) ①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청원서에 첨부되는 소개하는 議員의 소개의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第3條(불수리사항의 통지) 議長은 청원이 청원법 第5條, 第8條 및 地方自治法 第66條에 해당되어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4條(이의신청) ①청원이 청원법 第8條第1項의 規定에 해당되어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議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원을 接受하여야 한다. 이 경우議長은 그 청원을 회부할 所管常任委員會 또는 第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委員會의 委員長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第5條(청원의 회부) ①議長은 청원을 接受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議員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所管常任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本會議의 議決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구성, 회부한다.

②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③議長은 이미 설치된 委員會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委員會에 회부할 수 있다.

第6條(청원의 審査) ①委員會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 중인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審査結果를議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②委員會는 第1項의 기간내에 청원의 審査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議長에게 중간 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第7條(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청원을 소개한 議員은 所管委員會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委員會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第8條(청원인등 진술) ①委員會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者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 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第9條(제척과 회피) ①議員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審査, 議決에 참여할 수 있다.

②本會議 또는 委員會는 第1項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議員이 청원의 審査, 議決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議員으로 하여금 審査, 議決하게 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議員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本會議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

④第1項의 사유가 있는 議員은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許可를 받아 그 청원의 審査, 議決을 회피할 수 있다.

第10條(本會議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委員會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本會議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 國家機關이나 麻浦區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國家 및 麻浦區의 정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第11條(審査報告) ①委員會에서 本會議에서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議決한 청원은 그 審査結果를 議長에게 報告하고 議長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議長 또는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원을 本會議에서 부의

하여야 한다.

②委員會가 청원을 本會議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意見書를 첨부하여 本會議에 報告한다.

1. 區廳長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議會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第12條(청원인에 대한 통지) 議長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1. 청원접수 및 위원회에의 회부
2. 委員會가 청원을 本會議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議決하여 議長에게 審査報告한 때
3. 청원에 대한 本會議의 議決이 있을 때
4. 區廳長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報告가 있을 때
5. 第11條第2項第2號에 해당하는 청원이 本會議에서 처리되었을 때

第13條(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 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다.

第14條(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議員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당해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15條(懲戒) 청원을 審査, 議決하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自治法 및 議會會議規則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第16條(준용규정) 委員會의 構成, 運營등에 관하여 이 規則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議會委員會條例와 議會會議規則을 준용한다.

附 則

- ①(시행일) 이 規則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②(경과조치) 이 規則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접수된 청원은 이 規則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지제1호 서식]

청원 소개 의견서

청원건명			
청원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개의원	인		
소개년월일			

소개의견

(This area is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intended for the applicant to write their opinion on the petition.)

[별지제2호 서식]

청원철회요구서

청원건명				
청원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개의원	인			
소개년월일		청원철회일자		

철회요구사유

Blank area for the withdrawal request reasons.